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

제출년월일 : 1998.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개정사유

지방공무원법 제14조제3항이 동법 제14조제4항으로 개정되었으며 국내여비규정이 폐지되고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근거규정 및 용어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골자

- “지방공무원법 제14조제3항”을 “지방공무원법 제14조제4항”으로 함 (안 제1조)
-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함 (안 제3조)

개정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14조제4항
- 공무원여비규정 대통령 제15680호

조 례 안 : 붙임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증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변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공무원법 제14조제3항”을 “지방공무원법 제14조제4항”으로 한다.

제3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